

대전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재나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 12. 22 자 2020재나45 결정

대전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나10094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단4026 판결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B중중

변론 종결 2020. 11. 10.

판결 선고 2020. 12. 2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단4026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나100946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① 대전 대덕구 G 임야 166m², M 대 202m², F 도로 40m'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95. 5. 17. 접수 제223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② K 임야 24,925m²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12. 3. 마친 합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K 임야 24,444m² 중 별지 도면 표시 50, 51, 52, 53, 99, 98, 97,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3m'에 관하여 2001. 10.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피고에 대한 대전 대덕구 K 토지에 관한 합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M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였고,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1. 29.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4026호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전 대덕구 F, G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95. 5. 17. 접수 제223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대전 대덕구 J, G, F, M 중 약 130m'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14.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나100946로 항소하였고 그 소송절차 중 피고에 대한

대전 대덕구 K 토지에 관한 합필등기 말소등기청구와 M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고,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13. 피고에 대한 재심 전 항소심에서 추가된 대전 대덕구 K 임야 24,925㎡에 관한 2010. 12. 3.자 합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재심 전 항소심에서 추가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재심 전 항소심에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K 임야 24,444㎡ 중 별지 도면 표시 50, 51, 52, 53, 99, 98, 97,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3㎡에 관하여 2001. 10.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각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0438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5. 1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5. 1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소유이던 대전 대덕구 K 임야 23,809㎡(이하 지번을 표시할 때 '대전 대덕구'는 생략한다)가 2006. 6. 9. K 임야 23,567㎡와 L 임야 242㎡로 분할되고, K 임야 23,567㎡가 2010. 11. 17.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된 후 그 면적이 24,925㎡로 적법하게 등록사항이 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K 토지는 등록사항정정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고 위와 같이 K 토지의 면적이 정정된 것은 허위 내지 위법하게 작성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등에 의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8, 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같은 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는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이경희

판사이태영

판사김선용

별지